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5. 15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5.8. 이필레 의원 외 8명

나. 회부일자 : 2019.5.8.

다. 상정일자 : 제2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5.15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김종선 의원】

가. 개정이유

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·경제적 손실을 막고,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 ~ 안 제3조)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
(안 제4조 ~ 안 제6조)

-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자동차 안전점검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9조)
- 교통지도 협조 및 교통안전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(안 제10조 ~ 안 제11조)
- 시행규칙 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제정조례안은 이필레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제정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·경제적 손실을 막고,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책마련의 근거와 법령 준수의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5조, 제6조에는 자치구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 - 안 제7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.
 - 안 제8조에는 자동차를 운행시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.

- 안 제9조에는 경찰서,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0조에는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하여 관내 학교 등 교통지도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1조에는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따른 교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제정안은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과 교통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과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여부 등 입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